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붙임 3 **학습교재 최종 정·오표** ※ 이전에 게시된 1·2차 정오표 내용 모두 반영

우편일반

□ 학습교재 목차

○ 제3편 제2장부터 페이지수 변경 및 오타 수정

기존	수정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1. 국제우편물의 접수 172 2. 종류별 접수 방법 174 3. 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189 제3장 국제우편요금 1. 개요 193 2.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195 3. 국제우편요금의 후납 197 4.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199 5.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 200 6. 국제회신우표권 202 제4장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1. 배달보장 서비스 205 2.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206 3. 사전 통관정보 제공 209 4. 국제우편 요금감액 제도 213 5. 그 밖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215 제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1. 프리미엄 서비스 218 제6장 각종 청구 제도 1. 행방조사청구 제도 223 2.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229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화 1. 국제우편물의 외부기록사항 변경 정정 또는 반환 234 2. 국제우편요금의 반환청구 238 제8장 국제우편 수수료 및 우편요금 고시 1. 우정사업본부 고시 24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구 243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1. 국제우편물의 접수 173 2. 종류별 접수 방법 175 3. 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190 제3장 국제우편요금 1. 개요 194 2.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196 3. 국제우편요금의 후납 198 4.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200 5.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 201 6. 국제회신우표권 203 제4장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1. 배달보장 서비스 206 2.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207 3. 사전 통관정보 제공 210 4. 국제우편 요금감액 제도 214 5. 그 밖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216 제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1. 프리미엄 서비스 219 제6장 각종 청구 제도 1. 행방조사청구 제도 224 2.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230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1. 국제우편물의 외부기록사항 변경 정정 또는 반환 235 2. 국제우편요금의 반환청구 239 제8장 국제우편 수수료 및 우편요금 고시 1. 우정사업본부 고시 24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44

【 제1편 국내우편 】

□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ㅇ 2. 전자우편서비스

- 2-2. 종류 (49p 표 내용 중 소형 부분)

기존		변경·추가	
소형	편지, 안내문, 고지서 등의 안내문(최대 6장)을 편지형태로 인쇄하여 규격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서비스	소형	편지, 안내문, 고지서 등의 안내문(최대 6장)을 편지형태로 인쇄하여 규격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서비스 (동봉서비스 최대 6매 포함)

- 2-2. 종류 (49p 표 내용 중 대형 부분)

기존		수정	
동봉서비스(A4)	- 추가 1매(19매까지): 15원	동봉서비스(A4)	- 추가 1매(20매까지): 15원

- 2-2. 종류 (49p 표 하단)

기존	변경·추가
(예시) 봉함식(소형) 규격봉투 규격에 동봉물 2장을 발송할 경우: 흑백 이용수수료(90원), 최초 1장 동봉서비스수수료(20원)를 합산 적용	- 내용문이 있는 경우: 규격봉투(소형) 규격은 기본 1장에는 20원, 초과 분량은 장당 10원, 대형봉투 규격은 구분없이 장당 15원 적용 - 내용문이 없는 경우: 기본 1장은 해당 규격 흑백 제작수수료를 적용 (예시) 봉함식(소형) 규격봉투 규격에 동봉물 2장을 발송할 경우: 흑백 이용수수료(90원), 최초 1장 동봉서비스수수료(20원)를 합산 적용

【 제2편 우편물류 】

□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ㅇ 4. 발송작업

- 나. 우편물의 발송 6) 우편물의 교환 가) 용기 직접교환 (116p 하단)

기존	수정
(2) 수구분우편물은 전량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생산한다.	(2) 다음의 수구분우편물은 전량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생산한다.

- 다. 국명표의 사용 1) 국명표의 작성 가) 국명표는 ~ (117p)

기존	수정
(4) 취급표시 : 특체, 제주선편, 휴일소포, 적(자청, 타청, 혼재), 통적(자청, 타청, 혼재), 소포(자청, 타청, 혼재), 익일특급(여권, 자청, 타청, 혼재), 특송반송, 계약등기반송	(4) 취급표시 : ~~특체, 제주선편, 휴일소포,~~ 적(자청, 타청, 혼재), 통적(자청, 타청,혼재), 소포(자청, 타청, 혼재), 익일특급(여권, 자청, 타청, 혼재), 특송반송, 계약등기반송 등

ㅇ 5. 우편물의 운송

- 마. 운송용기 2)운송용기의 종류와 용도 (121p 표 내용)

기존				변경·추가
우편자루	특급자루	국내특급우편물(익일특급우편물 제외) 담기	가호, 나호, 다호	특급자루 내용 삭제

□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ㅇ 1. 우편물의 수집

- 다. 무인우체국 우편물의 수집과 처리, 나) 우편물 수집업무 처리 기준 (127p 상단)

기존	수정
(3) 등기소포는 같은 지역, 다른 지역, 제주지역(익일특급, 일반)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3) 등기소포는 같은 지역, 다른 지역, 제주지역~~(익일특급, 일반)~~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ㅇ 2. 우편물의 배달

- 라. 우편물 배달 기준, 3) 특수(등기)~ (129p 상단)

기존	수정
3) 특수(등기)취급우편물의 배달은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째 배달(재배달)의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보관기간 내 우체국 영업일 중 특정일을 배달일로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 신청 시 1회 한해 실시한다.	3) 특수(등기)취급우편물의 배달은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째 배달(재배달)의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보관기간 내 우체국 영업일 중 특정일을 배달일로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 신청 시 1회에 한해 실시한다.

- 라. 우편물 배달 기준 3) 특수(등기)~ 가), 나), 다) (129p 상단)

기존	수정
가)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 없이 반환(반송) 나) 맞춤형 계약등기 (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반송) 다)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 없이 반환(반송)	가) 특별송달 : 3회 배달, 보관하지 않고 반환(반송) 나) 맞춤형 계약등기 (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반송) 다)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하지 않고 반환(반송)

ㅇ 3. 등기취급(부가취급·특수취급) 우편물의 배달

- 다.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132p)

기존	수정
다.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 128p「우편물 배달 기준」 참조	다.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 128p「라. 우편물 배달 기준」 참조

【 제3편 국제우편 】

□ 제1장 국제우편총설

ㅇ 3. 국제우편물의 종류~ 3-1. 개요

- 【참고】 국제우편물의 종류(분류) (160p 표)

기존	수정
국제통상우편물>내용물에 따른 구분>A/O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전통관정보제공	**국제통상우편물>내용물에 따른 구분>A/O**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사전통관정보제공~~
국제소포우편물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하는 소포 ※(항공·선편)사전통관정보제공,	**국제소포우편물**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하는 소포 ※~~(항공·선편)사전통관정보제공~~
K-Packet (계약고객 전용)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2kg 이하의 소형물품 ※사전통관정보제공	**K-Packet** (계약고객 전용)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2kg 이하의 소형물품 ※~~사전통관정보제공~~
국제특우편물(EMS)>비서류 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 이용 ※사전통관정보제공	**국제특우편물(EMS)>비서류** 서류 이외의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 이용 ※~~사전통관정보제공~~
도표 하단 ※ 사전통관정보제공은 향후 L/C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상국가도 추가되는 있는 추세임	**도표 하단** ※ ~~사전통관정보제공은 향후 L/C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상국가도 추가되는 있는 추세임~~ 사전통관정보제공 대상우편물 : 비서류(국제소포우편물, K-Packet, EMS[비서류], 한중 해상특송우편물), EMS(서류), 소형포장물

ㅇ 3-5. 국제특급우편(EMS)

– 다. 특성, 5) 외국에서~ (171p 상단)

기존	수정
5) 외국에서 국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은 국내당일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	5) 외국에서 국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은 국내익일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

□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ㅇ 3. 사전통관정보 제공

– 3-2 개요

· 나. 대상우편물 (210p)

기존	수정
EMS(비서류), 소포(항공, 선편), 소형포장물, K-packet 등 ※ 향후 LC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로 단계별 확대 예정	비서류(국제소포우편물, K-Packet, EMS[비서류], 한중 해상특송우편물), EMS(서류), 소형포장물

· 다. 대상국가 도표 윗부분 (210p)

기존	수정
대상국가 : 50개국('23.10.현재)	대상국가 : UPU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와 우편물을 교환하는 국가('24.01.현재)

· 다. 대상국가 도표 (210p)

기존	수정
대상국가 도표 내용 전체	해당 내용 삭제

– 3-3 유럽연합의 ICS2 R2~

· 가. 개요 2) 도착국 세관은~ ※ 부분 (210p)

기존	수정
2) 도착국 세관은 ~ ※ (R2) 항공은 '23. 9. 25. 접수부터, (R3) 선편은 '24년 3월 이후 적용	2) 도착국 세관은 ~ ※ (R2) 항공은 '23. 9. 25. 접수부터, (R3) 선편은 '24년 3월 이후 적용 ※ R3 단계가 실시되더라도 교재변경이 없는 한 당분간 제도명은 'ICS2 R2'로 유지함

□ 제6장 각종 청구제도

ㅇ 1. 행방조사청구제도

– 사. 행방조사 처리기관 가) 사고처리국 (225p)

기존	수정
※ 항공 및 선편우편물 사고처리국이 부산국제우체국 POSA국제우편팀으로 일원화	※ 항공 및 선편우편물 사고처리국이 부산국제우체국에서 POSA국제우편팀으로 일원화

– 아. 행방조사 청구의 접수.처리 / 가) 창구 접수우체국의 업무처리 절차 (227p)

기존	수정
※ 전화로 발송인과 수령인의 주소・성명, 도착국가, 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능	해당 내용 삭제

□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ㅇ 제7장 제목 (235p)

기존	수정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변환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예금일반

【 제1편 금융 개론 】

□ 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ㅇ 1. 금융회사

- 1-1-3. 은행업무 범위, (28p <표 2-2>) 은행의 업무범위 오타 수정

기존		
부수업무	은행업 시행령 제18조	• 수입인지, 복원,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수정		
부수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 제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ㅇ 3. 주식투자

- 3-1. 주식의 개념, 3-1-2. 주식투자의 특성, (70p 내용 중 괄호 부분)

기존	수정
(다만,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매매차익의 5,00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당 내용 삭제

【 제2편 우체국금융 제도 】

□ 제6장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ㅇ 2. 금융실명거래 원칙 및 방법

- 2-2-3. 비대면 실명확인 (143p 하단)

기존	수정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 대상자는 명의자 본인에 한정하고 대리인은 제외되며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 대상자는 명의자 본인에 한정하고 대리인은 제외되며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포함)이다.

- 2-2-3. 비대면 실명확인

·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144p 상단)

기존	수정
②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② 거래자와의 영상통화 등(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을 통해 확인

ㅇ 4. 자금세탁방지제도

- 4-1. 개요 (150p [그림6-2])

기존

[그림 6-2]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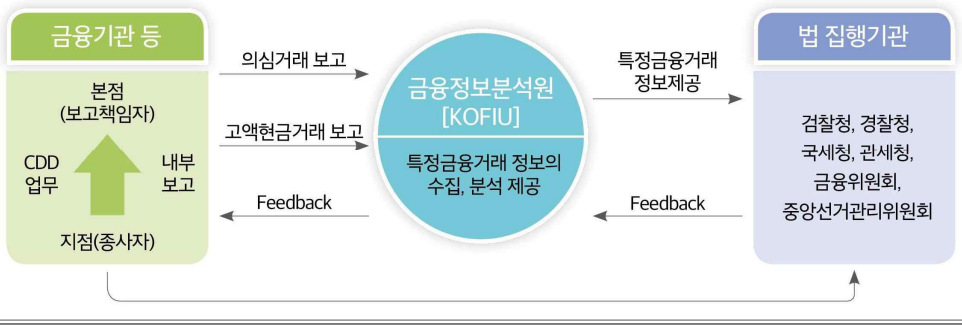

수정

[그림 6-2]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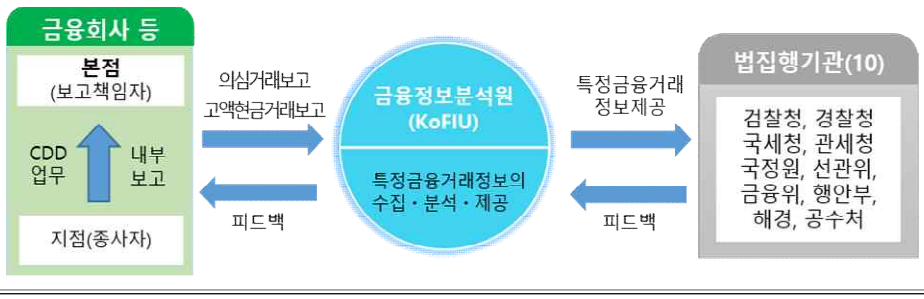

- 4-2. 금융정보분석기구(FIU) (150p)

기존	수정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기구(=자금세탁방지기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 4-3. 의심거래보고제도

· 4-3-3. 보고 방법 및 절차 (151p 하단)

기존	수정
보고책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의심스러운 거래자,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송금인/수취인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를 설명)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저장 매체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의심스러운 거래자,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송금인/수취인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를 설명)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다.

- 4-4. 고액현금거래보고

· 4-4-1. 개념 (152p 중단)

기존	수정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 4-4-2. 도입목적 (152p 하단)

기존	수정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제7장 예금관련법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 2-6.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170p <표 7-2>)

기존

<표 7-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2021년 이후~)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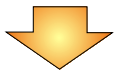

수정

<표 7-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세 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 2-7. 신고와 납부

·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171p [사례1])

기존	수정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8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0,000,000 × 14%) = (7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2,756,000 + 2,800,000 = 15,5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5,556,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8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0,000,000 × 14%) = (74,900,000 × 24% - 5,760,000) + 2,800,000 = 12,216,000 + 2,800,000 = 15,01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5,016,000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171p [사례2])

기존	수정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6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 15% - 1,080,000) = 11,055,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64,900,000 × 24% - 5,760,000) + 2,800,000 = 12,61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 15% - 1,260,000) = 10,875,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2,616,000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172p [사례3])

기존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 중 큰 금액] : 18,770,000원

㉠ 종합과세방식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x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5,100,000)] x 35% -14,900,000 + (20,000,000 x 14%) = 18,770,000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x 15% -1,080,000] + [10,000,000 x 25% + 50,000,000 x 14%] = 15,155,000

○ 배당세액공제 [㉮, ㉯ 중 적은 금액] : 3,3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x 11% = 3,300,000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 = 3,615,000원

수정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 중 큰 금액] : 18,230,000원

㉠ 종합과세방식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x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5,100,000)] x 35% -15,440,000 + (20,000,000 x 14%) = 18,230,000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x 15% -1,260,000] + [10,000,000 x 25% + 50,000,000 x 14%] = 14,975,000

○ 배당세액공제 [㉮, ㉯ 중 적은 금액] : 3,255,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x 11% = 3,300,000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230,000)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4,975,000) = 3,255,000원

【 제3편 우체국금융 상품 】

□ 제8장 우체국금융 상품

ㅇ 1. 예금상품

- 1-2. 거치식 예금 8)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 (183p 하단)

기존	수정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

□ 제9장 우체국금융 서비스

ㅇ 5. 제휴서비스

- 우체국금융 제휴서비스 현황 (205p <표 9-11> 내용)

기존

구분	분야	주요업무
창구망개방	창구망 공동이용업무	• 창구공동망업무(자동화기기 포함)
		• 노란우산 판매대행
		• SWIFT해외송금
		• 환전서비스
		• 특급해외송금(머니그램)
		• 우체국CMS 입금업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접수대행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T-Money 카드)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	• 증권계좌 개설 대행
		• 증권제휴카드 발급 등
	소 계	11개 업무
시스템개방	결제자금 수납 대행	• 일괄배치 서비스
		• 실시간 자동이체서비스
		• 가상계좌 서비스
		• 인터넷 지불결제
		• 예금주실명조회서비스
		• 금융결제원 지로/CMS
	자동화기기 이용업무	• 제휴CD업무 이용
		• 현금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 공동인증서비스
	소 계	9개 업무
합 계		20개 업무

수정

구분	분야	주요업무
창구망개방	창구망 공동이용업무	• 창구공동망업무(자동화기기 포함)
		• 노란우산 판매대행
		• SWIFT해외송금
		• 환전서비스
		• 특급해외송금(머니그램)
		• 우체국CMS 입금업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접수대행~~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T-Money 카드)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	• 증권계좌 개설 대행
		• 증권제휴카드 발급 등
	소 계	10개 업무
시스템개방	결제자금 수납 대행	• 일괄배치 서비스
		• 실시간 자동이체서비스
		• 가상계좌 서비스
		• 인터넷 지불결제
		• 예금주실명조회서비스
		• 금융결제원 지로/CMS
	자동화기기 이용업무	• 제휴CD업무 이용
		• 현금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 공동인증서비스
	소 계	9개 업무
합 계		19개 업무

- 5-4.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접수대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접수대행 내용 전체 삭제 (207p)

기존	수정
5-4.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접수대행 우체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창구망 업무제휴를 체결('20. 2월)하고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접수 업무를 대행하여 퇴직공제금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대상***: • 2020.5.26. 이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1955.5.26. 이전 출생한 퇴직자 * 단, 사망자 및 종전 기준에 따른 252일 이상 적립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접수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대리인 신청 불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접수대행 계약종료('24.2.8.자)로 해당 내용 삭제

보험일반

【 제1편 보험개론 】

□ 제3장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

ㅇ 4. 보험소비자 보호

- 4-1. 보험소비자 보호제도

· 4-1-3. 고객상담창구 및 보험가입조회 **(57p 하단 괄호 부분)**

기존	수정
(우체국보험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의 계약사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우체국보험의 경우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의 계약사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제5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ㅇ 9. 부활

- 9-2. 부활의 요건 표 제목 오타 수정 **(100p <표 5-7>)**

기존	수정
<표 5-7> 부88활의 요건	<표 5-7> 부활의 요건

【 제2편 우체국보험 제도 】

□ 제8장 우체국보험 및 언더라이팅

ㅇ 3. 보험계약의 청약 및 언더라이팅(청약심사)

- 3-2. 언더라이팅(청약심사), 3-2-6. 미성년자 계약 (131p)

기존	수정
청약일 현재 만 19세 미만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정할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며, 미성년자 계약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친권자일 경우에는 나머지 친권자 1인의 자필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후견인일 경우에는 후견인란의 자필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청약일 현재 만 19세 미만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정할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며, 미성년자 계약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친권자일 경우에는 나머지 친권자 1인의 자필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후견인일 경우에는 후견인란의 자필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 3-2-7.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제도 (132p <표 8-20>)

기존

<표 8-20>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내용

위험등급	사망보험금		암진단 보험금	1일당 입원비					질병 수술비 (1회당)	중증 치매 간병비 (매월)
	질병	재해		암 직접치료	요양병원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일반 질병	재해		
비위험직	4억원	6억원	1.2억원 (일반암)	25만원	2만원	25만원	8만원	8만원	300만원 (3종기준)	120만
위험4급								6만원		
위험3급		3억원						4만원	200만원 (3종기준)	
위험2급								3만원		
위험1급								2만원		

수정

<표 8-20>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한도 내용

위험등급	사망보험금		암진단 보험금		1일당 입원비					질병 수술비 (1회당)	중증 치매 간병비 (매월)
	질병	재해	일반	고액	암 직접치료	요양병원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일반 질병	재해		
비위험직	4억원	6억원	1.2억원	1억원	25만원	2만원	25만원	8만원	8만원	300만원 (3종기준)	120만
위험4급									6만원		
위험3급		5억원							4만원	200만원 (3종기준)	
위험2급	3억원	3억원							3만원		
위험1급									2만원		

□ 제9장 우체국보험 계약 및 보험금지급

ㅇ 1. 계약유지업무

- 1-5. 보험료의 할인

· □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대상상품 (140p 도표 내용)

기존	수정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2109, (무)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109, (무)우체국통합건강보험 2109, (무)온라인정기보험 2109, (무)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 ※ '23. 12월 현재 판매상품 기준	(무)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무)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 2109, (무)우체국통합건강보험 2109, (무)온라인정기보험 2109, (무)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 ※ '24. 4월 현재 판매상품 기준

【 제3편 우체국보험 상품 】

□ 제10장 우체국보험 상품

ㅇ 1. 개요

- 1-3. 판매중인 상품 (156p)

기존	수정
2023년 11월 3일 현재 보험 종류별 판매중인 상품목록은 아래와 같다.	2024년 4월 15일 현재 보험 종류별 판매중인 상품목록은 아래와 같다.

- 1-3. 판매중인 상품 (156p 표 내용)

기존

<표 10-3> 보험종류별 판매중인 상품목록

보 험 종 류		시행일 (고시일)
보장성 보험 (42종)	ㅇ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301	2023.01.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당뇨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와이드암보험 2112	2021.12.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미니암보험 2112	2021.12.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요양보험 2112	2021.12.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종신보험 2201	2022.01.24.
연금 보험 (6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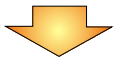

수정

<표 10-3> 보험종류별 판매중인 상품목록

보 험 종 류		시행일 (고시일)
보장성 보험 (36종)	ㅇ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2024.02.28.
	ㅇ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2024.01.01.
	ㅇ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추가)	2023.11.24.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당뇨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2021.09.13.~~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와이드암보험 2112~~	~~2021.12.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미니암보험 2112~~	~~2021.12.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요양보험 2112~~	~~2021.12.01.~~
	~~ㅇ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종신보험 2201~~	~~2022.01.24.~~
연금 보험 (7종)	~	
	ㅇ 우체국연금보험 2312 (추가)	2023.12.01.

ㅇ 2. 보장성 보험

- 2-4(172p), 2-12(198p) 보험상품 2종 수정

기존	수정
2-4.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2109 내용 2-12.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301 내용	2-4.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내용 2-12.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내용 ※ 두 상품은 상품 변경으로 2024년 4월 기준으로 상품 내용 별도 게시

- 2-29 부터 2-41 까지 중 보험상품 7종(247~266p)

기존	수정
2-29. 무배당 우체국온라인당뇨보험 2109 내용 2-30.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보험 2109 내용 2-35. 무배당 온라인내가만든희망보험 2109 내용 2-36.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와이드암보험 2112 내용 2-37. 무배당 우체국온라인미니암보험 2112 내용 2-38.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요양보험 2112 내용 2-41.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종신보험 2201 내용	현재 판매중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상품 내용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

- 2-43, 2-12 보험상품 2종 추가

기존	수정
(신규 추가 상품)	2-43. 무배당 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내용 4-7. 우체국연금보험 2312 내용 ※ 두 상품은 상품 추가로 2024년 4월 기준으로 상품 내용 별도 게시

ㅇ 5. 우체국보험 관련 세제

- 5-1. 보장성보험 관련 세제 <표 10-4> (283p 표 내용)

기존

<표 10-4> 세액공제 대상 상품('23.11.3.)

구 분		상품 목록
판매중지	보험료전액	다보장 · 체신건강 · 암치료 · 우체국암치료 · 평생보장암 · 종합건강 · 어린이 · (무)꿈나무(보장형) · 교통안전 · 재해안심 · 의료비보장 · 우체국종신 · 직장인생활보장 · 우체국건강 · 하이커버건강 · 평생OK · 하이로정기 · 우체국치아 · 우체국암보험 · (무)100세종합보장 · (무)우체국장제 · (무)꿈나무 · (무)우체국큰병큰보장 · (무)우체국여성암 · (무)우체국생애맞춤보험 · (무)우체국자녀지킴이 · (무)우체국100세건강 · (무)우체국요양 및 부가특약
	보험료일부	장학 · (구)연금 · 알뜰적립 · 상록 · 파워적립 · (무)장기주택마련저축 · (무)꿈나무(저축형)
판매중	보험료전액	(무)에버리치상해 · (무)우체국안전벨트 · (무)우체국건강클리닉 · (무)만원의행복 · (무)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 ·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 · (무)우체국치아 · (무)어깨동무 · (무)우체국하나로OK · (무)우체국간병비 · (무)우리가족암 · (무)우체국간편가입건강 · (무)우체국더간편건강 · (무)우체국온라인암 · (무)우체국든든한종신 · (무)우체국실속정기 · (무)우체국당뇨안심 · (무)우체국온라인당뇨 · (무)우체국온라인어린이 · (무)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 · (무)우체국온라인3대질병 · (무)우체국온라인정기 · (무)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 · (무)우체국New100세건강 · (무)내가만든희망 · (무)온라인내가만든희망 · (무)win-win단체플랜 · (무)우체국치매간병 · (무)우체국통합건강 · (무)우체국나르미안전 · (무)우체국와이드건강 · (무)우체국온라인와이드암 · (무)우체국온라인미니암 · (무)우체국온라인요양 · (무)우체국온라인입원수술 · (무)우체국온라인종합건강 · (무)우체국온라인종신 · (무)우체국온라인치매간병 및 각 보장성 특약

수정

<표 10-4> 세액공제 대상 상품('24.04.15.)

구 분		상품 목록
판매중지	보험료전액	다보장 · 체신건강 · 암치료 · 우체국암치료 · 평생보장암 · 종합건강 · 어린이 · (무)꿈나무(보장형) · 교통안전 · 재해안심 · 의료비보장 · 우체국종신 · 직장인생활보장 · 우체국건강 · 하이커버건강 · 평생OK · 하이로정기 · 우체국치아 · 우체국암보험 · (무)100세종합보장 · (무)우체국장제 · (무)꿈나무 · (무)우체국큰병큰보장 · (무)우체국여성암 · (무)우체국생애맞춤보험 · (무)우체국자녀지킴이 · (무)우체국100세건강 · (무)우체국요양 · (무)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 · (무)우체국온라인당뇨 · (무)온라인내가만든희망 · (무)우체국온라인와이드암 · (무)우체국온라인미니암 · (무)우체국온라인요양 · (무)우체국온라인종신 및 부가특약
	보험료일부	장학 · (구)연금 · 알뜰적립 · 상록 · 파워적립 · (무)장기주택마련저축 · (무)꿈나무(저축형)
판매중	보험료전액	(무)에버리치상해 · (무)우체국안전벨트 · (무)우체국건강클리닉 · (무)만원의행복 · (무)우체국급여실손의료비 · (무)우체국노후실손의료비 · (무)우체국간편실손의료비 · (무)우체국치아 · (무)어깨동무 · (무)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 · (무)우체국간병비 · (무)우리가족암 · (무)우체국간편가입건강 · (무)우체국더간편건강 · (무)우체국온라인암 · (무)우체국든든한종신 · (무)우체국실속정기 · (무)우체국당뇨안심 ~~· (무)우체국온라인당뇨~~ · (무)우체국온라인어린이 ~~· (무)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 · (무)우체국온라인3대질병 · (무)우체국온라인정기 · (무)우체국더든든한자녀지킴이 · (무)우체국New100세건강 · (무)내가만든희망 ~~· (무)온라인내가만든희망~~ · (무)win-win단체플랜 · (무)우체국치매간병 · (무)우체국통합건강 · (무)우체국나르미안전 · (무)우체국와이드건강 ~~· (무)우체국온라인와이드암 · (무)우체국온라인미니암 · (무)우체국온라인요양~~ · (무)우체국온라인입원수술 · (무)우체국온라인종합건강 ~~· (무)우체국온라인종신~~ · (무)우체국온라인치매간병 및 각 보장성 특약

- 5-3. 연금저축보험 관련 세제

· 5-3-2.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또는 연금수령시 세제 (286p)

기존	수정
다만,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이 정오표는 이전에 게시한 1·2차 정오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정오표입니다.

보험상품 변경 2종

2-4.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건강종신보험 2402

□ 주요 특징

특 징
○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통한 유족보장과 특약 가입을 통한 건강, 상해, 중대질병·수술, 3대질병 보장 ○ 다수의 특약 중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부담없는 보험료로 각종 질병, 사고 및 고액치료비 보장 ○ 주계약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선택 시 동일한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표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 부담 완화 ○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일부특약을 갱신·비갱신 선택형으로 설계하여,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및 고액계약 할인(주계약)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가입요건

○ 주계약(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표준형))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만15~50세	종신	5,10,15,20,30년납, 80세납	월납	1,000만원~ 4,000만원 (500만원 단위)
51~60세		5,10,15,20년납, 80세납		
61~65세		5,10,15년납, 80세납		
66~70세		5,10년납, 80세납		

○ 특약

•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 1종(20년갱신형)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	월납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5세~99세	1~20년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주기)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80,90,100세만기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80세만기·20년납 및 80세만기·80세납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나이 60세는 가입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 1종(20년갱신형)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	월납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5세~99세	1~20년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주기)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80,90,100세만기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

※ 80세만기·20년납 및 80세만기·80세납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나이 60세는 가입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402,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 1종(20년갱신형)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	월납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35세~99세	1~20년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주기)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80,90,100세만기	주계약과 동일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80세만기·20년납 및 80세만기·80세납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나이 60세는 가입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종(20년갱신형) 및 2종(비갱신형) 합산 한도임

•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5년	전기납	월납	5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갱신계약	만20세~99세	1~5년			

※ 보험기간은 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96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최초계약	만15~70세	20년	전기납	월납	1,000만원(고정)
갱신계약	만35세~99세	1~20년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Ⅵ(20년갱신형) 2402를 가입하는 경우 (무)암클리닉특약 2402를 가입해야 함
※ 보험기간은 2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81세 이후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함.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고액 할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할인율	1.0%	2.0%	3.0%

주1)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한해 적용

□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

1.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2종(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2.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함
3.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2종(표준형) 예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함.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예정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함

주1) 해약환급금 50%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한해 적용

□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II(갱신형) 2109의 경우, 갱신계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7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음~~ ~~•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 2109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할 수 있음~~
~~갱신계약 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가능~~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갱신형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까지 갱신 가능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 종료 • (무)암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암진단보험금에 한함) 및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소액암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뇌출혈진단보험금, 뇌경색증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중대질병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질병진단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중대수술특약Ⅲ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은 동시에 갱신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의 세부보장(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및 항암약물치료보험금에 한함)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또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보험료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가능

□ 보장내용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사망 시

○ 특약

•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Ⅲ 2402

지급구분	지급사유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재해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외모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재해화상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사고 1회당)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무배당 건강클리닉특약Ⅱ 2402

지급구분	지급사유
질병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질병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2대성인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무배당 상해클리닉특약Ⅱ 2402

지급구분	지급사유
재해장해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재해수술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무배당 암클리닉특약 2402

지급구분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		지급사유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소액암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치료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암수술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암직접치료 통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한도)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함

• 무배당 뇌질환클리닉특약 2402

지급구분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		지급사유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뇌질환 치료	뇌혈관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뇌출혈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뇌혈관질환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무배당 심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지급구분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		지급사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심장 질환 치료	심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심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기간 중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급성심근경색증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허혈성심장질환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 한도, 연간 10회 한도)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무배당 간폐신장질환클리닉특약 2402

지급구분 (1종(20년갱신형)의 경우, 세부보장)		지급사유
중대질병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중기이상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기이상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주요 간폐 신장 질환 치료	주요간폐 신장질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 간질환, 주요 폐질환 또는 주요 신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주요간폐 신장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 간질환, 주요 폐질환 또는 주요 신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 간질환수술, 주요 폐질환수술 또는 주요 신장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2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단, 1종(20년갱신형)에 한함)

• 무배당 중대수술특약Ⅲ 2402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중대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Ⅵ 2402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항암방사선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항암약물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함

• 무배당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Ⅴ(5년갱신형) 2402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함)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함

•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VI(20년갱신형) 2402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함

2-12.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 주요 특징

특 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 가입요건

○ 주계약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한도액
1년 만기	만 15세 이상	1년납	연납	10,000만원

※ 가입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 특약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액
무배당 단체재해사망특약 2401	만15세 이상	1년만기	연납	20,000만원
무배당 단체질병사망특약 2401				10,000만원
무배당 단체입원의료비보장특약 2401				1,000만원
무배당 단체통원의료비보장특약 2401				1,000만원

주1) 주계약, 무배당 단체재해사망특약 2401 및 무배당 단체질병사망특약 2401의 가입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경우 4,000만원으로 함

○ 단체실손의료비보장 중지특약 2401

□ 보장내용

○ 주계약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 발생시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장해지급률 3~80%미만 발생시

○ 특약

• 무배당 단체재해사망특약 2401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 발생시

• 무배당 단체질병사망특약 2401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질병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 발생시

• 무배당 단체입원의료비보장특약 2401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입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천만원 한도)

• 무배당 단체통원의료비보장특약 2401

지급구분		지급사유
통원 의료비	외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1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보험상품 추가 2종

2-43.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 주요 특징

특 징
○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보험 ○ 별도의 조건 없이 체신관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 ○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 임신 22주 이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산모의 임신질환 추가보장 ○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

□ 가입요건

○ 주계약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태아	10년만기	전기납	연납	1,000만원(고정)

주1)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함.

○ 특약

•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17~45세 (임신 22주 이내 산모)	분만시까지 (최대 10개월)	일시납	일시납	1,000만원(고정)

주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를 임신한 모(母)(산모)에 한하며, 임신 22주 이내 태아가 주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주2)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나,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최대 10개월)로 하고, 분만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함. 이 때, 분만은 출산, 사산, 유산을 포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료 납입

○ 이 보험은 보험료의 전부를 공동 보험계약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무효·취소·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

□ 보장내용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희귀질환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특약

•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지급구분	지급사유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임신고혈압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임신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4-7. 우체국연금보험 2312

□ 주요 특징

특 징
○ 유배당 상품 : 배당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시 배당혜택 제공 ○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Ⅳ로 적립되며,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0% (다만, 가입후 10년 초과시 0.5%)의 금리 보장 ○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 –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 : 초기연금액 증액으로 소득절벽기 보완(조기집중연금형), 평생동안 연금수령 통한 생활비 확보 가능, 조기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금 수령 – 확정기간연금형 : 연금개시 후에도 해지 가능하므로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 ○ 중도인출제도 및 추가납입제도 :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시 이자부담 없이 중도인출로 자금활용, 자유롭게 추가납입으로 고객편의 제공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가입요건

○ 주계약

구분	연금개시나이(A)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주기
종신연금형 (정액형,조기집중연금형)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45~80세	0~(A-5)세	일시납 3,5,7,10,15,20년납	일시납 월 납	수시납
확정기간 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확정지급)					

○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료 납입한도액

(단위 : 만원)

가입나이	일시납	월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 미만	500~4,000	10~110	10~60	10~40	5~30	5~20	5~10
20~29세	500~6,000	10~160	10~90	10~60	5~40	5~30	5~20
30~39세	500~8,000	10~190	10~110	10~80	5~50	5~40	5~30
40~49세	500~9,000	10~230	10~130	10~90	5~70	5~40	5~30
50세 이상	500~10,000	10~270	10~150	10~110	5~80	5~50	5~40

○ 추가납입보험료

– (월 납)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 가능.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 중 작은 금액에서 해당년도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함.

·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과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함.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가입할 때(가입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 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을 1개월로 하고 이후 계약해당일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함.

– (일시납)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함.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 중도인출금에 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제1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금액(다만,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월납계약의 경우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 일시납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인출시 적립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보험연도 기준 매년 최초 4회까지의 중도인출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적립금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고액계약 적립에 관한 사항 (월납계약에 한함)

○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 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 가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고액계약 적립조건	고액계약 적립금액
3년납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1.0%
5년납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1.5%
7년납 이상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2.0%

□ 보장내용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 급 액
제1 보험 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 일시납 보험료의 20% x 해당 장해지급률 월납 : 월납 보험료의 20배 x 해당 장해지급률
제2 보험 기간	생존 연금	종신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중기간 동안에는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 조기집중기간 : 5년, 10년 연금액 비율 : 200%, 300%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주1)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주2)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